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64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 2) 추진 필요성: 학원·교습소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음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시스템 운영, 연수자 관리, 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바. 예산 규모: 금118,621,000원(금일억일천팔백육십이만일천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78,621,000원(금칠천팔백육십이만일천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2025년 소요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예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불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2026년 학원 설립 · 운영자 등 연수 계획)

2026년 학원설립 · 운영자등 연수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연수 운영 개요

- ▷ (연수기간) 2026년 5월 ~ 10월(위탁기간 중 수탁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기간: 2026년 4월 ~ 12월
- ▷ (연수대상) 학원 ·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 ▷ (연수형태) 학원 · 교습소 단체에 위탁하여 집합 · 온라인연수 병행
- ▷ (연수내용)
 - ①학원 관계 법령(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포함), ②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③법정의무교육(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 신고의무 등), ④어린이 통학버스 및 시설 안전관리, ⑤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 ▷ (소요예산) 금118,621천원
 - 한국학원총연합회: 78,621천원, 한국교습소총연합회: 40,000천원

I . 추진배경 및 방향

□ 목적

- 학원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 및 역할 교육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및 사회교육 담당 자질 향상
-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 기여

□ 관련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제21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0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 연수 기본방향

-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한 학원법 준수사항 안내
 - 학원 관련 법령(자치법규 포함)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강조
-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자체 유도

II. 2025년 연수결과

□ 연수 개요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학원, 교습소 단체 위탁)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 연수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 연수위탁기간: 2025. 5. ~ 10.
- 연수방법: 온라인연수, 집합연수 병행
 - 집합연수 대상: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2024.1.1.~2025.5.31. 등록)

□ 연수 결과

(단위: 명, 천원)

연도	운영 형태	학원설립·운영자 (집합+온라인)		교습자 (온라인)		계		집행액	만족도 ("%) "보통 이상"	만족도 ("%) "만족 이상"	외국인강사 (온라인)	
		대상	참석(%)	대상	참석 (%)	대상	참석 (%)				대상	참석 (%)
2022	위탁	15,210	10,080 (66.2)	9,787	6,302 (64.3)	24,997	16,382 (65.5)	155,447	96.8	74.7	5,321	578 (10.8)
2023	위탁	15,260	11,042 (72.3)	9,957	5,987 (60.1)	25,217	17,029 (67.5)	164,750	95.0	76.9	5,204	35 (0.6)
2024	위탁	15,358	8,502 (55.4)	10,170	6,522 (64.1)	25,528	15,024 (58.9)	148,275	97.7	80.9	5,019	447 (8.9)
2025	위탁	15,396	10,842 (70.4)	10,529	8,341 (79.2)	25,925	19,183 (74.0)	118,621	97.8	81.8	4,616	828 (17.9)

III. 세부추진계획

□ 연수 개요

- 연수기간: 2026. 5. ~ 10.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수대상: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외국인강사
- 연수방법: 온라인연수, 집합연수 병행
 - 집합연수 대상: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2025.6.1. 이후 신규 설립 등록)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 수탁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 위탁운영기간: 2026. 4. ~ 12.

연수대상 및 인원

(2025. 9. 30. 기준, 단위: 명)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외국인강사	계
15,338	10,452	5,245	31,035

※ 연수 시행 시기에 따라 교육 인원수 변동 가능

※ 연수대상 및 연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분배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본청	교육지원청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사무편람 승인 ◆ 연수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료(샘플)제공 ◆ 연수과정 모니터링 ◆ 민원응대 ◆ 연수결과(참석률 등) 점검 ◆ 예산집행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대상자 명단 제공 ◆ 연수강사 지원 ◆ 연수안내 및 홍보 ◆ 집합연수 모니터링 ◆ 민원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집행 계획서 제출 ◆ 위탁계약 체결 ◆ 사무편람 작성 및 본청 제출 ◆ 온라인연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연수일정 편성 및 집합연수 장소 확보 ◆ 연수안내 및 홍보 ◆ 연수대상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업로드, 오류 점검 등 ◆ 연수실시 ◆ 연수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자 명단,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등 ◆ 예산 집행 및 정산서 제출

주요 연수내용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외국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관련 법령 안내 ◆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사례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 및 대피유도훈련 관련 내용 - 대피요령,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 개인정보 보호 ◆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 ◆ 한국 문화 이해

※ 위 내용을 포함하되 연수대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수 운영

○ 연수교재 내용 구성(주관: 수탁기관)

- 학원법 관련 사항(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포함),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관리 등 내용으로 구성
※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원법 관련 사항 및 학원 운영 중점사항 포함
-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광고 금지 내용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에 대한 과도한 선징수 및 레벨테스트 지양 내용
- 연합회(수탁기관) 소개 및 주요활동 등 홍보자료 미편성

○ 연수홍보 및 안내(주관: 수탁기관, 교육지원청)

- (수탁기관) 학원 · 교습소 단체와 연계된 네트워크, 문자 등 활용
- (교육지원청) 학원장, 외국인 강사 및 교습자 대상 참여 독려 적극 협조 (월 3회 이상)

※ 문자 서비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연수 참여 홍보

○ 연수 강의(주관: 수탁기관)

- (학원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 주요 변경등록 의무사항 및 학원법 준수 사항 중 위반 빈도가 높은 사항 등
※ 집합연수의 경우, 학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의(민원, 특이사례 등 추가 안내)
-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등
- (안전교육)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내용 등

○ 연수 모니터링(주관: 교육지원청)

- 집합연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으로 민원 대처 및 부조리 즉시 시정 조치
※ 집합연수 후 모니터링 결과(체크리스트) 학원정책팀으로 제출

○ 연수 평가 (주관: 수탁기관)

- 연수 종료 후 참석자(집합연수, 온라인연수)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연수내용, 참석률, 만족도 등 연수결과 제출(수탁기관→교육청)

○ 연수 운영 시 주의사항

- 집합연수 시 연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단위로 연수 운영
- 집합연수 시 현장질서 유지 및 연수와 상관없는 행위 금지
 - ※ 집합연수 중 연수와 관련 없는 사익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지원청별 모니터링 실시 예정

소요예산

(단위: 명, 천원)

교육대상	교육인원	예산액	연수방법	수탁기관
학원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10,500	78,621	집합·온라인연수 병행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교습자	8,000	40,000	온라인연수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계	18,500	118,621		

※ 교육인원은 2025년 연수실적 고려

추진일정

추진내용	시 기	담당기관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수립	2026. 4.	평생교육과
연수대상자 명단 제출	2026. 4.	교육지원청
수탁기관별 집행계획서 제출	2026. 4.	수탁기관
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026. 4.	평생교육과
연수 일정 안내 및 통보	2026. 4.	교육지원청
위탁 개시	2026. 5.	수탁기관
위탁금 지급	2026. 5.	평생교육과
연수 실시	2026. 5. ~ 10.	수탁기관
위탁 종료	2026. 12.	수탁기관
연수결과 제출 및 정산	2027. 1	수탁기관

※ 연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기대효과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학원법 및 학원 정책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외국인 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
- 안전 관련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

불임 2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5조의4(학원설립 · 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 · 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 · 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 · 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 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